



제434회국회(임시회)폐회중  
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

#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시책 사항의 명문화〉  
■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927호)

2026. 4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 오 세 일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□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제2216927호) .....               | 1 |
| Ⅰ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Ⅲ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시책 사항의 명문화(안 제23조제1항) .... | 2 |

## □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927호)

### 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도읍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6. 2. 20.
3. 회 부 일 : 2026. 2. 23.

#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·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,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, 도심형항공기의 안전,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·설비,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“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,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,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시책 사항의 명문화(안 제23조제1항)

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·추진하는 지원시책의 내용에 협의체 운영, 지원센터 운영, 세미나·전시회 개최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(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)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 | 제23조(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 |
| 1. ~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4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5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6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, 전시회 등 개최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육성을 위하여 <u>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| <p>-----<u>필요한 것으로서</u><br/><u>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

## 가. 검토의견

현행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<sup>1)</sup>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①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, ②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, ③ 도심형항공기의 안전,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·설비, ④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1)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3조(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)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1.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2.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
3. 도심형항공기의 안전,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·설비
4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그런데 현행 제23조제1항제4호의 “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은 지원시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

이러한 포괄적 규정은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,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떠한 사업이 지원시책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<sup>2)</sup>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수립하여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협의체 운영, 지원센터 운영, 세미나·전시회 개최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첫째,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.

현행 제23조제1항제4호의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협의체 운영, 지원센터 운영, 세미나·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 사업이 지원시책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,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.

---

2) 지원시책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불분명해지고,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지원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둘째,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.

도심항공교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사업으로서,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조율, 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, 세미나·전시회를 통한 국민 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데,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.

셋째, 위임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.

도심항공교통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이므로, 법률에서 모든 지원 사항을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,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새로운 지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.

## **나. 국토교통부 의견**

현행법 제23조제1항제4호 “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입법절차가 진행 중(2026.3.10. 입법예고 완료)이고,

현행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도심항공교통의 육성을 위한 포괄적 내용과 달리 개정안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만큼 시행령에서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575 |